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030
----------	-------

발의연월일 : 2026. 7. 20.

발 의 자 : 엄태영 · 권영진 · 박충권
이만희 · 윤한홍 · 서천호
이종배 · 김재섭 · 김용태
김상훈 · 김태규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치원 교직원의 구분과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유치원 교사의 인건비 등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교직원이 질병 · 휴직 · 연수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대체인력 확보에 따른 인건비 부담 및 인력 수급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교직원이 부득이한 상황에서도 업무를 지속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원장은 교직원의 질병 · 휴직 · 연수 등으로 업무 공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에게 대체인력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대체인력 지원과 사립유치원의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아교

육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교직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며 유아의 안전과 교육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6 신설, 제26조).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6(대체인력의 지원) ① 원장은 교직원의 질병, 휴직, 연수 등으로 업무 공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에게 대체교사 등 대체인력(이하 “대체인력”이라 한다)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대체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인력 지원의 방법·절차·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제3항 중 “설립 및 유치원교사의”를 “설립, 유치원교사 및 제22조의6제1항에 따른 대체교사의”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2조의6(대체인력의 지원) ①</u> <u>원장은 교직원의 질병, 휴직,</u> <u>연수 등으로 업무 공백이 발생</u> <u>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u> <u>우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에게</u> <u>대체교사 등 대체인력(이하</u> <u>“대체인력”이라 한다)의 지원을</u> <u>요청할 수 있다.</u> <u>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u> <u>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u> <u>대체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u> <u>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u> <u>체인력 지원의 방법·절차·범</u> <u>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u> <u>령으로 정한다.</u>
제26조(비용의 부담 등) ①·② (생 략)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u>설립 및 유치원</u> <u>교사의 인건비 등 운영에 드는</u> <u>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u> <u>한다.</u>	제26조(비용의 부담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u>설립, 유치원교사</u> <u>및 제22조의6제1항에 따른 대</u> <u>체교사의</u>----- -----.